

##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	2003. 6. 25	조례	제1310호
개정	2008. 6. 16	조례	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22	조례	제2009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5. 5. 28	조례	제208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. 31	조례	제2336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	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8. 12. 21	조례	제2437호
일부개정	2022. 3. 2	조례	제2840호(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
일부개정	2023. 12. 28	조례	제306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4. 8. 22>

제2조(설치 및 관리)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(이하 “대지보상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4. 8. 22, 2022. 3. 2>

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. <개정 2014. 8. 22, 2015. 5. 28, 2018. 1. 31, 2023. 12. 28>

제3조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%이상 해당액
3. 국·도비의 보조금 및 용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 <개정 2014. 8. 22, 2018. 7. 31>

1.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(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당해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을 위한 경비

제5조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4. 8. 22, 2018. 7. 31, 2022. 3. 2>

제5조의2(특별회계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28>

[본조신설 2018. 12. 21]

제6조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09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5. 28 조례 제208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도시정책과”를 “융복합도시정책과”로 한다.

부칙 <2018. 1. 31 조례 제2336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융복합도시정책과”를 “스마트도시과”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12. 21 조례 제2437호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3. 2 조례 제2840호, 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